

'17. 9.

김제시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안”

문 화 홍 보 축 제 실



# 김제시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17-
----------	-------

제출연월일 : 2017. 9. .

제출자 : 김제시장

## 1. 제정이유

-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개정(2015.11.18.공포, 2015.11.19.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따른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완화(안 제2조)

- 도시지역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30퍼센트 이하의 비율만큼 휴양콘도미니엄의 미취사 객실을 허용

## 3. 참고사항

-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 나. 규제심사 대상 여부 : 여
- 다. 예산수반 여부 : 부
-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 : 여
- 마. 자치법규 검토(부서의견조회) : 여
- 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대상 여부 : 여
-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 아. 입법예고기간 : 2017.6.12.~7.3

## 4. 따로 붙임

가. 조례 제정안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서 : 원안 동의

다. 자치법규 검토결과 : 이견 없음

라. 입법예고결과 : 이견 없음

마.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결과 : 원안 가결

바. 참고자료

-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따른 조례 개정 요청(기획감사실-916(2017.1.19.))

사. 관련법령 발췌서

- 관광진흥법 제4조(등록)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조(등록절차)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등록기준)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별표 1(관광사업의 등록기준)

아. 방침결정문

## 김제시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1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1 제3호에 따라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한민국 최초 5년 연속 대표축제, 제19회 김제지평선축제 2017. 9. 20 - 9. 24(5일간)



# 김 제 시



수신 문화홍보축제실장  
(경유)

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통보 (2017A전북김제039)

1. 문화홍보축제실 - 15125(2017. 6. 28.)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출하신 「김제시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붙임 검토의견 통보서(2017A전북김제039) 1부. 끝.

여성가족부장관 *최일동*

주무관 김태희 여성정책담당 출장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행정지원국장 진결 2017. 6. 29.  
손삼국

협조자

시행 여성가족과-28031 (2017. 6. 29.) 접수 문화홍보축제실-15203 (2017. 6. 29.)

우 54386 전라북도 김제시 중앙로 40, (서암동, 김제시청) / <http://www.gimje.go.kr>

전화번호 063-540-6904 팩스번호 0635406929 / [woxoals@korea.kr](mailto:woxoals@korea.kr) / 부분공개(5)

「2017년 전북방문의 해」

문서관리카드 문화홍보축제실-15203 1/1

#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7A전북김제039		
정책명	김제시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전라북도 김제시	
	부서명	문화홍보축제실	
	담당자명	나성천	전화번호 063-540-3324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7년 6월 12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문화홍보축제실)	<p>■ 법령명 : 김제시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p> <p>I. 개요</p> <p>□ 제정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li> <li>○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정비하여 관광활성화에 기여</li> </ul> <p>□ 제정 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 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li> </ul> <p>II. 분석평가 항목별 점검 결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조항 : 해당없음</li> <li>2. 성별 구분(고정관념) 개선 필요성 및 개선안 : 해당없음</li> <li>3. 성별 특성 관련 조항 : 해당없음</li> <li>4.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및 개선안 : 해당없음</li> <li>5. 성별 균형 참여(위원회 등) 관련 조항 : 해당없음</li> <li>6. 성별 균형 참여 필요성 및 개선안 : 해당없음</li> <li>7. 성별 통계 관련 조항 : 해당없음</li> <li>8. 성별 통계 개선안 : 해당없음</li> </ol>		
종합 검토 의견 (여성가족과)	<p>■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p> <p>○ 『김제시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반영, 성별 균형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함.</p> <p>○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해당 없음</p>		
<p>「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7년 06월 29일</p> <p style="text-align: center;"><b>김제시 행정지원국장</b></p> <p style="text-align: center;">(담당자/연락번호 : 김태희/063-540-6904)</p> <p style="text-align: center;">문화홍보축제실장 귀하</p>			



## 결 과 보 고 서

문서번호 문화홍보축제실-15703

제 목 『김제시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  
조회 결과보고

1. 문화홍보축제실-13560(2017. 6. 12.)호 관련입니다.
2. 『김제시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 조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김제시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나. 조회기간 : 2017. 6. 12. ~ 6. 26.

다. 의견수렴 : 의견없음

라. 보고자의견 : 의견 제출이 없음에 따라 이후 절차를 진행함이 타당함. 끝.

2017. 07. 04.

김 제 시 장

귀하

주무관

나성천

관광담당

이태우

실장

전결 2017. 7. 4.

양운엽

협조자



## 결 과 보 고 서

문서번호 문화홍보축제실-15742

제 목 『김제시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기간 종료에 따른 결과보고

『김제시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아 래 -

- 가. 조 례 명 : 김제시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 나. 예고기간 : 2017. 6. 12. ~ 7. 3.
- 다. 의견수렴 : 의견 없음
- 라. 보고자의견 : 의견 제출이 없음에 따라 이후 절차를 진행함이 타당함. 끝.

2017. 07. 04.

김 제 시 장

귀하

주무관

나성천

관광담당

이태우

실장

전결 2017. 7. 4.

양운엽

협조자

대한민국 최초 5년 연속 대표축제, 제19회 김제지평선축제 2017. 9. 20 - 9. 24(5일간)



# 김 제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알림**

2017년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17.7.13.) 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연번	심의번호	소관부서	안 건 명	의결결과
1	2017-36	문화홍보축제실	김제시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2	2017-37	건설과	김제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	"
3	2017-38	"	김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17-39	상하수도과	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17-40	환경과	김제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헌옷 재활용 촉진 조례안	"
6	2017-41	"	김제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2017-42	"	김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2017-43	"	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2017-44	보건위생과	김제시 「지평선 깨·찐·맛·값」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끝.

김 제 시 장



수신자 문화홍보축제실장, 건 설 과 장, 상하수도과장, 환 경 과 장, 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

---

주무관 김경미 의회법무담당 박광국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2017. 7. 13.  
협조자

시행 기획감사실-9117 (2017. 7. 13.) 접수 문화홍보축제실-16762 (2017. 7. 13.)

우 54386 전라북도 김제시 중앙로 40, (서암동, 김제시청) / <http://www.gimje.go.kr>

전화번호 540-3723 팩스번호 063-540-3576 / [iamstory@korea.kr](mailto:iamstory@korea.kr) / 부분공개(5)

『2017년 전북방문의 해』

문서관리카드 문화홍보축제실-16762 2/2

역동하는 김제 세계로, 미래로!



# 김 제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따른 우리시 조례 부서 검토 결과 제출

1.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633(2016. 12. 30.)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 「2016년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선정하여 지자체가 해당 조례를 정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3. 우리시에도 정비대상 조례가 있어 정비하고자 하오니, 관련 부서에서는 붙임 해당 조례를 면밀히 확인·검토하여 정비대상 조례를 신속히 제·개정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인·검토 사항을 1.23(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2016년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책자 1부.  
2. 2016년 조례 규제개선 50선 정비목록 1부. 끝.

## 기 획 감 사 *박민우*

수신자 문화홍보축제실장, 주민복지과장, 여성가족과장, 회계과장, 도시재생과장, 경제교통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안전총괄과장, 상하수도과장, 환경과장, 보건소장(건강증진과장)

주무관	유미란	규제개혁담당	손강원	기획감사실장	전결 2017. 1. 19. 박민우
협조자	의회법무담당 박광국				
시행	기획감사실-916	(2017. 1. 19.)	접수	여성가족과-3431	(2017. 1. 19.)
우	54386	전라북도 김제시 중앙로 40, (서암동)	/ <a href="http://www.gimje.go.kr">http://www.gimje.go.kr</a>		
전화번호	063-540-3877	팩스번호	063-540-3576	/ ymr0720@korea.kr	/ 비공개(5)

# 관광진흥법

[시행 2017.3.27.] [법률 제14476호, 2016.12.27.,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 044-203-2818

- 제4조(등록)**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 ② 삭제 <2009.3.25.>
-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7.7.19., 2009.3.25.>
-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2009.3.25.>
-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7.19., 2008.2.29., 2009.3.25.>

#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7.3.27.]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3.27., 타법개정]

**제3조(등록절차)**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 등록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기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휴양 콘도미니엄업과 전문휴양업 중 온천장 및 농어촌휴양시설을 2012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10.29., 2013.10.31.>

1.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경우 별표 1 제3호가목(1)에도 불구하고 같은 단지 안에 20실 이상 객실을 갖추어야 한다.
2. 전문휴양업 중 온천장의 경우 별표 1 제4호가목(2)(사)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가. 온천수를 이용한 대중목욕시설이 있을 것
  - 나. 정구장·탁구장·볼링장·홀터·미니골프장·배드민턴장·롤러스케이팅장·보트장 등의 레크리에이션 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거나 제2조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 시설이 있을 것
3. 전문휴양업 중 농어촌휴양시설의 경우 별표 1 제4호가목(2)(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또는 관광농원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나. 관광객의 관람이나 휴식에 이용될 수 있는 특용작물·나무 등을 재배하거나 어류·희귀동물 등을 기르고 있을 것

##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5조 관련)

### 3. 휴양콘도미니엄업

#### 가. 객실

(1) 같은 단지 안에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다만,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20실 이상으로 한다.

(2) 관광객의 취사·체류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다만,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나. 매점 등

매점이나 간이매장이 있을 것. 다만, 여러 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 다. 문화체육공간

공연장·전시관·미술관·박물관·수영장·테니스장·축구장·농구장, 그 밖에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문화체육공간을 1개소 이상 갖출 것. 다만, 수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관광지·관광단지 또는 종합휴양업의 시설 안에 있는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역동하는 **김제** 세계로 미래로!

문서번호	문화홍보축제실-1206	주무관	담당	문화홍보축제실장	부시장	시장
보존기간	5년	나성천	이민수	양은영	이동복	이영호
결재일자	2017. 5. 23.	협 조 의회법무담당 <b>김광복</b> 규제개혁담당 <b>손강영</b> 기획감사실장 <b>이수영</b>				

**김제시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안)**



**김 제 시**  
문화홍보축제실